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확인 서류제출 안내

## ■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일정

서류 제출 및 심사기간	2024.02.22.(목) ~ 2024.02.25.(일) 10:00 ~ 16:00까지
계약체결 기간	2024.02.27.(화) ~ 2024.02.29.(목) 10:00 ~ 16:00까지
제출장소	테넨바움294 분양홍보관 (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23, 상가 B2층)

## ■ 구비서류 Check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자격확인 필수서류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• 당사 분양 홍보관 비치
	다자녀 가구 배점기준표	본인	• 당사 분양 홍보관 비치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1.10. 이후 발급분, 여권사실증명서 첨부)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: 아파트 계약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 계약 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추가서류 (해당자)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 존비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번호(뒷자리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1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 한 경우
	임신증명서류 (임신진단서)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) 제출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)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	• 임신의 경우(당사 분양홍보관 비치)
대리인 제출시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위임장	청약자	•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(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: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	해외체류 관련 증빙 서류 일체	본인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- 국내기업·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명령서, 재직증명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관련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: ①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출입국사실증명원 (상세)	배우자 세대원	•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체류기간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